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0. 11 선고 2022가단201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남

변 론 종 결 2022. 9. 6.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0.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양도약정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1. 7. 접수 제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0. 12. 22.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4. C와 신용보증금액 5,10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9. 10. 14.부터 2021. 10. 14.까지, 대출예정금액 6,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C는 2019. 10. 14.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D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21. 10. 14.까지로 정하여 금융어업자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C는 2021. 10. 14.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2. 2. 18. D조합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1,592,3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15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 3. 2. ‘C는 원고에게 51,748,457원 및 그중 51,592,304원에 대하여 2022. 2.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83,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2020. 12. 30.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1. 1. 7. 접수 제27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C는 2020. 12. 22.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 양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0. 14. C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C가 2021. 10. 14.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22. 2. 18. D조합에 51,592,30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후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인 2021. 10. 14.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에 빠졌고, 원고의 대위변제는 2022. 2. 18. 이루어졌다.

②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인 2021. 10. 14.까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③ E조합은 2005. 7. 8. C에게 13,6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C는 만기일인 2021. 7. 8.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1. 7. 9. 연체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위 만기일까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E조합은 2020. 4. 27. C에게 9,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C는 만기일인 2021. 4. 27.에 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였는데, 2021. 4. 27.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 위 만기 도래일 전에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E조합은 2020. 8. 28. C에게 6,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2021. 3. 3.부터 2021. 3. 11.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연이자의 대상인 기내이자의 액수 합계가 136,741원에 불과하였으며, 추가적인 연체는 없었다.

⑥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이와 같이 단순히 C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1

1. 전라남도 완도군

답 1289㎡

끝.

별지2

어선번호 :

어선의 종류 : 동력선

어선의 명칭 :

선적함 : 완도군

선체재질 : FRP

총톤수 : 1.32톤

기관의 종류· 마력 및 대수 : 가솔린엔외기관 150.000마력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 나선일체식 추진기 1대

끝.

